내부통제체계 운영규칙

제정 2023. 09. 27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의 내부통제 제도 수립 및 운영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내부통제"라 함은 진흥원의 운영 목표 달성을 위해 효과적인 업무 운영, 사업관리 측면, 기관 윤리 분야, 신뢰성 있는 재무·회계 관리 체계 유지, 법규 준수 측면에서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이행하며, 각종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.
- 2. "내부통제체계"란 내부통제를 위하여 구축·운영되는 통제환경, 위험평가, 통제활동, 정보 및 의사소통, 모니터링 등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.
- 3. "위험"이라 함은 진흥원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, 사업관리 측면, 기관 윤리 분야, 재무· 회계 관리 체계의 신뢰성 확보, 법규 및 정책의 준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소를 말한다.
- 4. "내부통제 총괄부서(이하 "총괄부서"라 한다)"란 진흥원의 내부통제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5. "내부통제 이행부서(이하 "이행부서"라 한다)"란 내부통제 대상 단위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부서를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① 이 규칙은 진흥원의 모든 업무와 임직원들의 직무 수행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. ② 내부통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내부통제 조직 및 역할

- 제4조(내부통제 조직) 진흥원의 내부통제 조직은 원장, 이사회, 총괄부서, 이행부서, 감사부서,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다.
- 제5조(원장) ① 원장은 진흥원의 내부통제체계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계획·수립 및 운영을 총괄하고, 이에 필요한 제반 제도적·조직적·인적 여건을 마련한다.
 - ② 원장은 내부통제체계 목표 및 내용 등을 임직원에게 공유·전파하고 제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.
 - ③ 원장은 정기적으로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주요 사항은 필요시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.
- 제6조(총괄부서) ①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내부통제체계 설계 및 운영 등 총괄

- 2. 내부통제 관련 매뉴얼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
- 3. 내부통제 제규정 준수 관련 여부 점검. 위험 관리
- 4. 내부통제체계운영 관련 문제점 및 미비사항에 대하여 이행부서 및 관련부서에 시정·개선 요구
- 5. 필요시 이사회 등 관련 회의 참여 및 적법성 등에 대한 의견 진술
- 6. 기타 원장이 내부통제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7조(이행부서) 이행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소관업무 및 소관조직 운영 관련 내부통제 시행
- 2. 내부통제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소관업무 및 소관조직 운영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통제수준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
- 3. 내부통제체계 운영 관련 총괄부서 또는 감사부서가 시정·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적기 이행

제8조(감사부서) 감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내부통제 관련 위험과 통제수단을 식별·평가하고, 그 결과를 연간감사계획과 감사대상 선정에 반영
- 2. 내부통제체계 운영 관련 문제점 또는 취약요인 등이 인식된 경우 감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
- 3. 감사결과에 따라 내부통제체계 운영 관련 문제점 미비사항에 대하여 이행부서 및 관련 부서에 시 정·개선 요구
- 4. 기타 감사규칙에 따른 업무 및 전사 혹은 단위부서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는 내부통제체계의 설계 및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및 의견 제시
- 제9조(임직원) ① 진흥원의 모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며, 직무수행 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업무상 법적 위험과 관련된 국내·외 법규 및 진흥원의 각종 내부규정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.
 - ② 임직원은 위법행위나 내부통제 관련 법규 등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즉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며, 이러한 위반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장 내부통제체계 운영

- 제10조(내부통제 목적 및 활동 범주)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부통제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.
 - 1. 조직 운영 측면 : 경영목표 달성 등을 위한 효율성과 효과성 확보
 - 2. 사업관리 측면 : 사업관리 분야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
 - 3. 기관 윤리 분야 : 기관·조직 운영 관련 윤리성 확보
 - 4. 회계 및 정보 관리 측면 : 회계 및 정보의 신뢰성, 완결성 및 적시성 확보
 - 5. 법규 준수 측면 : 관계 법령 및 원규의 준수
 - ② 제1항의 내부통제체계의 범주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통제환경 : 내부통제를 유인하는 상벌 체계, 인력운용 정책, 교육정책, 원장의 철학, 윤리,

리더십 등

- 2. 위험평가 : 진흥원의 목표 달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·외부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· 부석하는 활동
- 3. 통제활동 : 임직원이 원장 및 이사회가 제시한 경영방침이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거나, 동 정책 및 절차가 준수되도록 하기 위한 제반 활동
- 4. 정보 및 의사소통 : 임직원이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확인, 수집, 보고, 소통하는 절차와 체계
- 5. 모니터링: 내부통제체계 운영의 효과성을 점검 및 평가
- 제11조(통제환경) ① 원장은 내부통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직업윤 리를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통해 제시하고 솔선수범하며, 임직원이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각자역할을 이해하고 이행하도록 통제환경을 조성한다.
 - ② 원장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적시에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하며, 임직원이 내부통제 관련 문제점이나 부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조기에 보고할 수 있는 통제환경을 마련한다.
- 제12조(위험평가) 원장은 내부통제 목적 달성을 저해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식별 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구축·운영한다.
- 제13조(통제활동) ① 원장은 내부통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직원이 수행해야 할 통제활동을 설정하여 운영한다.
 - 1. 통제활동의 수행자 및 이에 대한 승인ㆍ검토자
 - 2. 통제활동의 수행과 관련된 기록 또는 보고서
 - 3. 통제활동과 연계된 사후관리 절차 및 시스템 등
 - 4. 통제활동의 수행주기
 - ② 제1항의 통제활동 범주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상위자 확인, 검토, 승인 : 결재자 등이 업무처리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분석하고 판단 하거나 업무처리가 유효함을 승인하는 것
 - 2. 물리적 통제, 실사 : 유형자산, 재고자산, 유가증권, 현금 등 진흥원의 자산을 물리적으로 보호 하거나, 실물 확인 절차를 통해 서류상 보고되는 기록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
 - 3. 업무분장 :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잠재적인 이해상충이나 실수 또는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할 위험을 감소시키고 적시에 발견하기 위하여 임직원간에 책임과 의무를 분리시키는 것
 - 4. 시스템 관리 : 사전에 정의된 기준에 따라 시스템상 접근권한을 통제하거나, 부적정한 업무 처리를 방지하거나 데이터를 보호하거나 정보의 정확성, 완전성,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시스템을 관리 운영하는 것
- 제14조(정보 및 의사소통) ① 원장은 내부통제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내리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·유지·관리한다.
 - ② 원장은 임직원이 내부통제 관련 정책 및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관리하고, 관련 정보가 임직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의사소통체계를 마련한다.
 - ③ 원장이 전자형태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 및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철저한 보안시스템의 구축과 적절한 비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**제15조(모니터링)** ① 원장은 내부통제체계가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주기적으로 자가점검하는 등 자체평가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한다.
 - ② 감사 및 감사부서는 독립적인 관점에서 내부통제체계에 대한 자체평가 운영실태와 그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하고, 필요시 이사회에 보고한다.
 - ③ 원장은 자체평가 결과 또는 감사부서 평가결과, 내부통제 제도 운영 관련 미비점이 나타난 경우 적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.

제4장 보 칙

- 제16조(교육 및 훈련) 원장은 임직원이 취급 업무와 관련된 법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을 시행한다.
- 제17조(내부고발제도) ① 원장은 내부통제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의 내부제보 및 신고제도를 운영한다.
 - ② 원장은 제보 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 또는 누설되지 않거나, 해임이나 그 밖의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18조(위반 시의 처리) 원장은 이 규칙 및 내부통제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위반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중요성 및 위반 정도 등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한다.
- 제19조(인센티브 부여) 원장은 내부통제 제도에 대한 임직원 참여 제고 등을 위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
- 제20조(위임) 이 규칙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, 원장은 이 규칙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관련 규정에 따라 담당 부서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부 칙<2023. 9. 27.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